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7751 판결 [건물명도]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현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성빈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8. 1. 4.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차임 43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26.부터 2020. 2. 2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2.경 및 2022. 2.경 각 갱신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분이 2023. 11.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 2. 25.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석

별지